

#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445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25. 5. 30.  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,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통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지정 방법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(안 제3조)
- 다.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(안 제4조)
- 라.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(안 제5조)
- 마.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(안 제6조)
- 바.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(안 제7조)
- 사.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
- 1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
- 2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

(현시점에서 비용추계 어려움)

다. 합의 :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의 되었음

[전통시장과-648(2025. 3. 6.)호]

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(2025. 4. 25. ~ 2025. 5. 15.) 결과, 의견제출 없음
  - 평창군 공고 제2025-670호, 경제과-22098(2025. 4. 25.)호
- 2) 규제심사 :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(2025. 5. 19.) 원안의결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6610(2025. 4. 25.)호]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5910(2025. 4. 23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7632(2025. 5. 20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7931(2025. 5. 26.)호]

##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골목형상점가 지정)**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평창군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,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,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,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평창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3조(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)**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.

**제4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)**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
2.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
3.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(정관) 및 명부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**제5조(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)**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등 환경개선
  2. 공동마케팅, 공동상품, 디자인 개발, 상권컨설팅
  3.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
  4.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, 사업비는 사업내용 및

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)**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.

**제7조(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)**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
2.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
3.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조직 및 대표자의 변경

**제8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
2. 제3조에 따른 밀집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3.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,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## 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제 호

## 골목형상점가 지정[변경]서

1. 상점가 명 :

2. 대표자 성명:

3. 소재지 :

4. 면적·점포수 :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 및 「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평창군수

직인

[별지 제2호서식]

## 골목형상점가 지정(변경)신청서

※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| 접수번호             | 접수일 | 처리기간   | 14일 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|------|
| 골목형<br>상점가<br>개요 | 명 칭 | 대표자 성명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소재지 | 전화번호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규모  | 토지 면적: $m^2$ , 건물 연면적: $m^2$ , 영업장 면적: $m^2$ , 점포 수: 개 |      |
| 구역<br>상세         | 주소  | 면적( $m^2$ )  | 점포 수 |
|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|
| 상인 조<br>직        | 명칭  | 대표자 성명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주소  | 전화번호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설립일 | 회원 수   |      |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 및 「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평 창 군 수 귀하

|      |   |           |
|------|-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1.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| 수수료<br>없음 |
|      | 2.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| 3.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(정관) 및 명부 각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
210mm×297mm [백상지 80g/ $m^2$ ]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통시장” 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·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,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.

가.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

나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2. “상점가”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#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” 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(안 제5조)

- 공동시설 환경개선, 활성화 지원 사업 등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골목형상점가 지정 예정 구역 및 개소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, 현시점에서 비용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

## 4. 작성자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 관광경제국 경제과장 전 해 순 |
| 연락처 | (033) 330 - 2761     |